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5월 21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 관

○대통령령 제18389호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자사상표 없는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2.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다만,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생물공학기술(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생산전문기업간 기술이전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

제9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4조제3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포함한 독립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를

제15699호

관

부

2004. 5. 21. (금요일)

말한다.

1. 당해 기업에 대한 주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이 당해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6월 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 2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7.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최근 2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제12조의 제목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전문회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전문회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는”을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결산서 등의 비치·공시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②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사본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해 전문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포상 및 지원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법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상

가. 국가 생산성향상 종합대상

나. 국가 생산성향상 부문대상(리더십·고객만족·정보화·인재개발·신뢰경영·공정혁신 등)

2.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유공자 특별상

3.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 특별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 등의 관련 임직원과 동항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진단지도 사업수행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다.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진단지도 수행경력이 5년 이상된 전문인력이 20명 이상일 것

라.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성경영체제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 동호 각목의 요건에 현저하

게 미달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인증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인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조사활동
3.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기술료의 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

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를 “생산성본부”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자료제출요구 대상법인)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별표 2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10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31호를 삭제한다.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10.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27.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이유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7092호, 2004. 1. 20. 공포, 2004. 5. 21. 시행)됨에 따라,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및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생산전문기업을 기업의 매출액중 자사상표 없는 제품의 매출액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및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으로 정함(영 제6조제1항).
-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6월 이내에 신용평가업자 2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재무제표상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추가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함(영 제

11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5년동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고,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는 그 사본을 제출받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함(영 제17조의3 신설).
- 라.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진단지도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함(영 제18조의3제1항 신설).
-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

〈법제처 제공〉